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

발 의 자 : 박형수 · 박수민 · 김종양
김석기 · 임이자 · 서지영
김장겸 · 이만희 · 김대식
송언석 · 김정재 · 김형동
이상휘 · 조정훈 · 조지연
강명구 · 정희용 · 구자근
임종득 · 최형두 · 이달희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,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.

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도,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적·구조적 대

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 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.

한편,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 지역은 부지 개발을 통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,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이 전주변지역으로 그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,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업시행자가 이 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,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,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·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,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 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).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이전주변지역 소음방지대책의 마련)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소음저감방안
2.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
3. 소음대책사업

② 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미리 이전주변지역의 주민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·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3(종전부지 개발이익의 활용 등) ①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전부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이전주변지역 소음방지대책의 마련)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소음저감방안</u> <u>2.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</u> <u>3. 소음대책사업</u> <u>② 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미리 이전주변지역의 주민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·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3(종전부지 개발이익의 활용 등) ①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</u>

중전부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른다.